

##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시범사업) 공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1.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달성을 위하여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산업·에너지 부문 국제감축실적 확보 및 우리기업 국제 탄소시장 진출 지원

### 2. 지원 내용

####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시범사업)

##### ○ 지원대상

- 투자지원사업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서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서 본 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예정이 있는 사업

##### ○ 지원분야

- 투자지원사업 :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감축설비 설치투자를 지원하고 지원금에 상당하는 국제감축실적을 회수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기술적·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분석 지원
  - 본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수주 및 투자를 위한 세부 법률·기술·재무 및 감축량 산정에 대한 종합 검토·분석 지원

세부사업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	------	-----------	------

투자지원사업 <sup>주1)</sup>		자유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비율 :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이내</li> <li>- 감축설비의 구매, 설치공사, 감리, 시험운전 등을 포함하는 취득설비 투자비 지원</li> <li>○ 지원규모 : 프로젝트 당 최대 60억원 이내</li> <li>○ 수행기관은 국제감축실적 전담기관 분배량을 계획된 연도에 전담기관에 양도하여야 함</li> </ul>	국제감축사업추진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자유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50~80% 이내<sup>주2)</sup></li> <li>- 인건비(타당성조사 참여인력) 및 경비(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 대상</li> <li>○ 선정과제 수 : 4개 프로젝트 내외</li> <li>○ 지원규모 : 프로젝트 당 최대 2억원 이내</li> <li>○ 과제기간 : 9개월 이내</li> </ul>	
지원사업 <small>주1)</small>	본타당성 조사	자유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50~80% 이내<sup>주2)</sup></li> <li>- 인건비(타당성조사 참여인력) 및 경비(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 대상</li> <li>○ 선정과제 수 : 3개 프로젝트 내외</li> <li>○ 지원규모 : 프로젝트 당 최대 4억원 이내</li> <li>○ 과제기간 : 12개월 이내</li> </ul>	

주1) 당해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수시공고 가능하며,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업수요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주2)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주관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공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총사업비의 80% 이내	총사업비의 65% 이내	총사업비의 50% 이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중견·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주관기관이 중소·중견·대·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대학·연구소 등 기타기관인 경우 수행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중소기업을 포함하면 “중소기업”, 그 외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

### 3. 신청 요령

#### □ 신청서 양식

#####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구 분	공고문 게시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알림·뉴스 - 사업공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tra.or.kr) - 사업신청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 국민소통 - 공지사항

#### □ 신청서 제출

#####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접수기간
- 투자지원사업 : '24. 2. 19.(월) ~ '24. 4. 1.(월) 18시까지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24. 2. 19.(월) ~ '24. 3. 18.(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접수 마감시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처

사업명	제출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방문 또는 우편제출)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 528-1) 한국에너지공단 국제협력실 국제감축팀

※ 모든 제출서류는 인쇄본 및 전자파일 동시 제출, 전자파일은 이메일(itmo@energy.or.kr)과 USB로 모두 제출

### 4. 관련 규정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 등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공지사항 참조

## 5. 국제감축실적 고시가격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분배량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sub>2</sub>-eq)의 가격

□ 1년 평균가격('23) : 10,057원, 3년 평균가격('21~'23) : 14,864원 중 선택

□ 적용기간 : '24. 2. 19. ~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고 전날까지

## 6.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 → 심의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접수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 사업개시

### □ 지원제외 대상

####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신청기업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신청서 반려 조치

1.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 등이 지급 거절되거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의해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4. 휴·폐업 중인 경우
5.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영업·사업 정지 또는 사용 중지의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6.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0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7.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9. 완전자본잠식 또는 최근 2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10. 동일 및 유사한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기 지원받았거나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1.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신청 서류를 허위·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2.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선정·협약을 취소함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투자지원사업은 전담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사업 대상국 정부부처\*의 협력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국제감축실적의 국가 간 이전 승인 권한이 있는 사업 대상국 정부기관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투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국제감축실적을 협약기간 동안 계획된 연도에 전담기관에 분배하여야 함

- 국제감축실적의 양도 불가 또는 부족 시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0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 시행 가능
-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연차별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계속 투자 여부 결정
- \* 연차별 투자비 및 필요감축량, 감축실적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문의처

사업 구분	전담기관	담당자	연락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김영상 팀장	02-3460-7490
		김희철 P M	02-3460-7492
		장 경 과장	02-3460-3227
	한국에너지공단 (KEA)	최석재 팀장	052-920-0590
		안건우 과장	052-920-0592
		윤수현 주임	052-920-0593